

2009.12.23(수) 11:00

第143回 忠州市議會(定例會)

第3次 本 會 議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2] 충주시 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009.11.27	2009.11.27	2009.12.22	2009.12.22	심재연 의원
② 충주시리의관활구역 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총무과장
③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④ 충주시 택견전수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관광과장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의 제고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안의 종류(시민,공무원,직무,자유,지정제안) : 안 제4조
- 나.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안 제11조
- 다. 제안 심사기준 : 안 제14조
- 라. 창안의 등급(금,은,동,장려,노력상) : 안 제18조
- 마. 부상금의 지급 : 안 제19조
- 바. 창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 안 제23조, 제24조

②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및 본리 일원에 조성중인 첨단산업단지 지역의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류면 완오리 및 본리간 경계변경
 - 완오리 16필지($58,265m^2$) 본리로 편입
 - 본리 14필지($21,076m^2$) 완오리로 편입

③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부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도래에 따라 조문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본래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법과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신설 규정 반영(안 제2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20조)
- “운영”을 “설치 · 운영”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안 제12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세율 개정으로 1천분의 1.5 적용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 상쇄(안 제15조)
-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안 제18조)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동일한 감면규정이 있어 중복감면 규정 정비로 삭제(안 제30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치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3조의 2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주시 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통일(안 제34조)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법규인 문화재보호법의 조항을 바로잡고, 충주시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원을 규정하고자 하며,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역할을 강화하고 택견생활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 근거를 변경(안 제1조)

나. 택견전수관 조직의 구성원 규정(안 제4조의 2)

1)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부관장, 사무국장, 상임강사, 상임시범단을 둠

가)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국가이수자 자격을 갖춘자 중 관장, 부관장 각 1인

나) 회계 및 시설관리 등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국장 1인

다)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자 중 5인 이내의 상임강사

라) 택견 보급을 위한 15인 이내의 상임시범단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조직의 운영과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역할(심의·의결) 강화(안 제15조)

1) 택견전수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택견전수관 운영실적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강사 및 시범단의 활동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택견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추가

라. 택견전수관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별표 1)

택견전수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내용 중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이 없어 【별표 1】 내용에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세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별도의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이 필요하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규로 재단설립을 하지 않고 현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정비하여 대회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원문화관광재단 명칭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변경
- 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신설(안 제3조,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가 없으므로 공무원 제안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행정과 각종 제도 등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음.

-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8조에서 시설·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의 제공은 보안 관련 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추천제안”은 제안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직무제안”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안 제10조 중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안

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임.

②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이류면 완오리와 본리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지방산업단지 토지구획의 주요 도로를 따라서 리간 경계가 구분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오리 246-1번지 등 16필지 $58,265.7\text{m}^2$ 는 본리로 편입하고 본리 88번지 등 14필지 $21,076.2\text{m}^2$ 는 완오리로 편입하는 사항임.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

③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거나 인용법령의 개정, 한시적 감면규정의 정비와 세액감면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 안 제13조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 안 제12조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감면주택 감면' 규정과 안 제30조의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 세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제11조, 제20조의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안 제6조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감면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사항이며,
- 안 제15조는 금년도 2월에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일반주택에 대해 1천분의 1.5에서 1.0으로 세율을 낮추었으나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을 금번에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안 제18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 안 제22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안 제33조의 2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 안 제34조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서식을 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코자하는 것임.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을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택견전수관을 택견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하고 상임시범단을 두어 적극적인 전승보존 활동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며, 금년도에 완공된 생활관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금번에 신설되는 택견전수관 운영기구는 관장 1, 부관장 1, 사무국장 1명과 5인 이내의 강사, 15인 이내의 상임시범단원 등으로 구성하되 급여 또는 수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택견전수관의 운영실적, 강사 및 시범단의 활동실적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였고,

생활관 사용료는 본 생활관이 청소년수련원 생활관과 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음.

- 본 조례의 개정은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물론 택견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제반사항을 택견인들이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택견 활성화를 위해 택견인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업무 영역에 체육분야를 포함시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것임.

- 체육분야를 재단 업무에 추가하면서 재단의 명칭은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변경되고 이와 관련된 각 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
-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및 개최 등을 위해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시에서 운영 중인 법인의 성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조성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서 납부금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며,

시설규모는 해당 개발단지의 계획목표연도의 발생폐기물량을 예

측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폐기물 발생량이나 연구용역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예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또, 해당 사업의 준공전에 부담금을 납부토록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최대한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부담금 산출기준이 시와 사업자가 공감하고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뒷받침되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아 3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 질의 : 없음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주민들에게 설명되었는가?

▶ 답변 : 일부 설명이 되었음.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없음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조례를 전면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답변 :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음.
- ◎질의 : 상시 시범단 운영을 제대로 하기에는 급여가 부족하지 않나?
▶답변 : 기능적 9급 수준으로 높여 드릴 계획으로 있음. 운영을
해가면서 평가된 바에 따라서 검토하겠음.
- ◎질의 : 승단심사는 어디서 하는가?
▶답변 : 대한택견협회에서 하고 있음.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중원문화관광재단에 인력이 보강되는 것인지요?
▶답변 : 재단의 인력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임.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종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가?
▶답변 : 종전에는 소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았음.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 수정가결 |
| - 안 제6조 중 “주천제안” 을 “직무제안” 으로 수정 | |
| - 안 제8조 단서추가 : 단, 단론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안 제10조 중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안에서” 로 수정 | |
|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수정가결 |
| - 안 제2조 ‘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 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으로 수정 | |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끝 임

- ①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수정안 1부.
- ② 충주시리의관 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③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④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추천제안”을 “직무제안”으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안 제10조 중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제안의 제출) ① (생략)</p> <p>② 자유·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u>추천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u></p> <p>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u>직무제안은</u> _____</p> <p>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제10조(제안의 보완) ① _____ _____ <u>제안을 접수한 날부터</u> <u>7일이내의 범위안에서</u> _____ _____ _____</p> <p>② (제정안과 같음)</p>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u>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 ----- ----- <u>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u> ----- -----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의안 번호	1127
----------	------

제출년월일 : 2009. 12
제출자 : 충주시장

■ 제안이유

2010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I. 2010년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

□ 사업개요

- 위치 :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86-2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5,806m²(기확보)
건축연면적 1,485m² (45병상)
- 사업비 : 1,832백만원(국비 849, 도비 425, 시비 558)
 - 건축비 : 1,698,750천원
 - 기타 : 133,421천원(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월

□ 사업의 필요성

-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해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009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시기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물건	소재지	수량					
1	건물	동랑면 대전리 1686-28	1,485	1,832,171	2010	노인전문병원증축	충주시	
계	토지							
	건물	1 건	1,485	1,832,171				
	기타							

2010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1차)			합 계			비고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46 1	74,868.3 3,350	6,150,544 4,781,000	1	1,485	1,832,171	146 2	74,868.3 4,835	6,150,544 6,613,171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146	74,868.3	6,150,544				146	74,868.3	6,150,544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3,350	4,781,000	1	1,485	1,832,171	2	4,835	6,613,171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및 멸실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0년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

위치도 및 현장사진

